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2. 4.

금 융 위 원 회

1. 자료제공 대상, 대상 기관, 자료의 종류 구체화(안 제37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(법률 제18574호, 2021. 12. 7.)에 따라 자료 제공 대상,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, 자료의 종류 구체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자료제공 대상 구체화(제37조의3제1항)
 -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
 - 채무인수 자격 요건 확인
 - 주택보증 채무관계자(연대보증인, 물상보증인)에 대한 자료 확인
 - 신탁방식 주택연금 귀속권리자에 대한 자료 확인
-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구체화(제37조의3제2항)
 - 입법례(주택도시기금법)를 참고하여 12호로 구성
- 자료의 종류 구체화(제37조의3제3항)
 - 입법례(주택도시기금법)를 참고하여 인적사항, 국세 및 지방세, 연금·보험·급여, 부동산에 관한 자료 4호로 구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관계 증명,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,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2. 자료 요청절차 및 동의 방법 규정(안 제37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(법률 제18574호, 2021. 12. 7.)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, 동의 방법을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 규정(제37조의4제1항)
 - 입법례(공간정보관리법, 자동차관리법, 전자정부법, 사회보장급여법 등 시행령)를 참고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 명문화
- 전자문서 이외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 규정(제37조의4제2항)
 - 우편 또는 팩스 등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명문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표준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3. 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(안 제37조의5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(법률 제18574호, 2021. 12. 7.)안에서 명시한 연계 정보시스템 이외 추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 명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국토이용정보체계,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으로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각종 서류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의 서민·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4.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(안 제37조의6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(법률 제18574호, 2021. 12. 7.)에 따라 금융정보, 신용정보, 보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정보, 신용정보, 보험정보 요청 시 기재사항 규정
- 요청 받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해야하는 사항 규정
- 금융회사 등의 협회, 연합회, 중앙회의 정보통신망 이용가능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정보, 신용정보, 보험정보 요청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문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